

[별표 2]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I. 제 19기 제 8차 정기 이사회

: 2014년 12월 29일 오후 4시, 안전통지일 2014년 12월 24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리지아 토레스	임병철	전영교	빈센트 카멜링크	
1. 사외이사 성명	리지아 토레스	임병철	전영교	빈센트 카멜링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출장)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제 1호 안건 (제 19기 임시 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2호 안건 (제 19기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II. 이사회 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2014.01 ~)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목표	실적
리지아토레스	8	7	-	-	-	-	-	-
임병철	8	8	4	4	1	1	-	-
전영교	6	6	3	3	-	-	-	-
빈센트카멜링크	8	5	4	4	1	-	-	-

* 개최·참여란에는 횟수를 기재(해당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활동시간에는 간담회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재

III. 사외이사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사외이사는 당사 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관련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중

IV.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자본시장법 제 24 조)에 관한 결격사유는 없으며, 사외이사 자격조건(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과 관해서는 일부 사외이사에 한해 계열회사 상근임직원(4 호)에 해당하는 결격요건이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2 호 라목 후단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라 검직 가능함
2. 적극적 요건	충족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으로서 각기 충분한 실무 경험 보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보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중임.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 당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V.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 사항 없음

*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임